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51호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6 2 2 호 행정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2
○ 공	고 제 6 2 9 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3
○ 공	고 제 6 3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5
○ 공	고 제 6 4 3 호 2016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12
○ 공	고 제 6 4 5 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57
○ 공	고 제 6 4 8 호 보상협의 안내 공시송달 공고(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59
○ 공	고 제 6 5 0 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60
○ 공	고 제 6 5 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동넉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63

고 시

○ 고	시 제 3 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동넉지구 소3-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66
○ 고	시 제 3 3 호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7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22호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새로이 작성·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17. 3. 31 ~ 4. 14 (15일간)
2. 지적공부 시행일: 2017. 3. 31
3. 지적공부 작성내역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계		8필지		2,067.6		8필지		2,067.6
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1	도로	27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1-11	도로	276
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1	도로	5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1-12	도로	586
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2-1	대	4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0-29	대	449
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62-1	구거	17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1-10	구거	178
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63-2	도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0-30	도로	15
6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79-10	도로	37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1-9	도로	377
7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98-8	도로	69.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6-3	도로	69.8
8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98-9	도로	1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6-4	도로	116.8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
5. 기타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작성된 지적공부의 시행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29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3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고잔동 365-1번지 일원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2017. 3. 30 ~ 2017. 4. 14
 4.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공고기간 내
 - 나. 보상시기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비를 계약체결 후 지급
 - 다. 협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032) 453 - 2712)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토 지: 신분증1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통장사본
 - 지장물: 신분증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통장사본, 지장물소유확인서
- ※ 보상대상 토지의 근저당,(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전 해지 후 협의

5. 공시송달 내역

○ 토지

순번	동명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고잔동	339-1	도	43	서*분	인천 남동구 고잔로41번길***			
2	고잔동	462-21	도	3	박*익	인천부 송현리 **			
3	고잔동	477-8	도	103	오*만	서울 종로구 청진동 ***			
		477-2	도	45					
4	고잔동	364-9	도	116*40/ 300	백*용	인천 남동구 구월동 ***			
5	고잔동	364-9	도	116*40/ 300	백*분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 지장물

순번	동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고잔동	341-23	화장실	블록, 슬라브	오*제	인천 남구 학익소로61번길, ***-***			
			담장	블록 (H=1.6m)					
			대문	철재					

6. 기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3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3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정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개정 이유

-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견인대행업체로 지정된 견인차량을 대행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에 사용 가능하도록 대행업체 지정조건을 완화하여 다수의 견인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대행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대행업 지정조건(안 제7조)

-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을 구의 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0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884, FAX 45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3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 지정조건 완화를 통한 다수의 견인차량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대행업 관리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의 다른 업무 사용금지 및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견인대행 차량을 1대 이상 지정하여 견인업무에 상시 배차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3호)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 제17조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행업체는 1대 이상의 견인대행차량을 지정 견인업무에 상시 배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할 시는 근무시간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견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인대행차량을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를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타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u>	3. <u>대행업체는 1대 이상의 견인대행차량을 지정 견인업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할 시는 근무시간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견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 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인대행차량을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4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20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전문개정 2013.6.28.]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전문개정 2013.6.28.]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개정 2015-0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43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7년3월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재난이 총 1회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으나 사유시설인 주택침수등 피해가 7건 발생하여, 전부 복구되었으며 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구분하자면 호우 재난으로, 주택 침수가 7건, 농작물피해는 없었으며, 총 7건의 재해복구에는 7백만원이 소요되어 당해 연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2016년도 우리 구의 재난발생현황은 호우가 주요 피해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4개 (실)과 80명으로 전년도대비 2명 감소하였으며, 재난안전분야의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하여 안전총괄실을 개편하고, 자연재난팀과 사회재난팀을 통합하여 재난관리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재해문자 전광판 등 8종으로 총 39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 24개소 보다 15개소가 증가, 이는 재난영상감시시스템2개소, 산불감시카메라1개소 등의 설치로 인하여 다소 증가하여 2016년말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 방재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관련 분야 25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3명과 지역주민 연39회2,539명은 재난관리 예방교육(심폐소생술체험 등)훈련을 받았습니다.
 - 재난·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과, 산불예방 캠페인, 다중시설의 안전대비태세 점검에 대하여 지역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관리정책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9개의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 적용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5개소 감소한 66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별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46건에 대해 재시공 등 45건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지적된 1건에 대하여서는 2017년 예산반영을 통하여 조치 할 예정입니다.

- 재난방지시설에 대하여서는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공동구,배수펌프장,유수지 등 유지관리에 30억7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하천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오일웬스 등 7종의 환경방재 물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660개소의 의료시설, 학교·관공서, 경로당 등 216개소의 수용시설이 있으며,경로당172개소에 53,03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복구장비는 굴삭기·크레인·청소차 등 66대를, 산불진화장비는 산불진화차·펌프 등 388개를, 기타장비로는 양수기 등 1,26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은 건축·토목 등 35명을, 기능인력은 전기, 기계 등 92명이 있고,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대 등 19,338명이 있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67개 시설 중 56개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83.5%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은 1,029백만원으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666백만원 보다 362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2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255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3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6백만원 많게 사용하였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산불, 감염병 등 13종의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작성·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뉴얼에 의거 2016.05.19.일 오봉산 산불을 가정한 현장 숙달 훈련과 2016.04.26.일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가정한 현장 숙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5.12.~10.5 기간 총4회에 걸쳐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화재사고를 가정한 현장 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4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 하락 하였습니다. ※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시구의 재난관리역량은 풍수해(태풍, 호우 등)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추진실적은 우수하나, 지진해일 관련 예방 및 대비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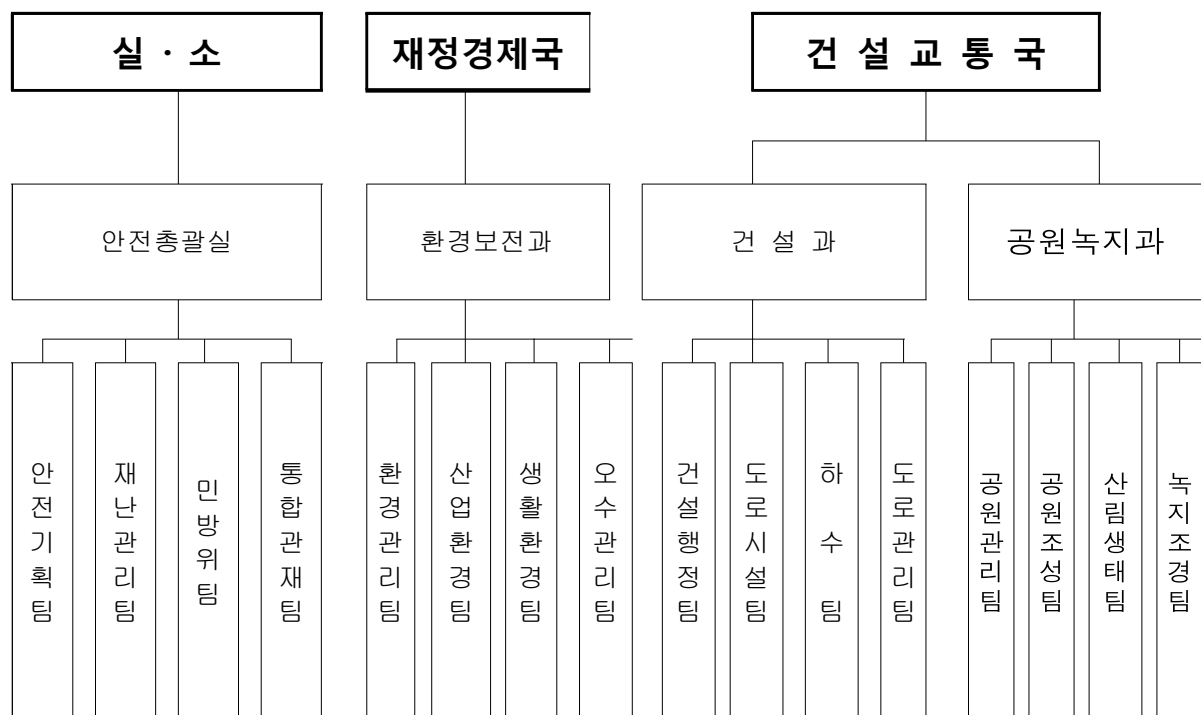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1 ~7.7	호 우	-주택침수 7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7,000천원)	침수피해 복구지원

※ 작성대상 : 복구계획서 수립 또는 재난의 발생에 따른 수습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 재난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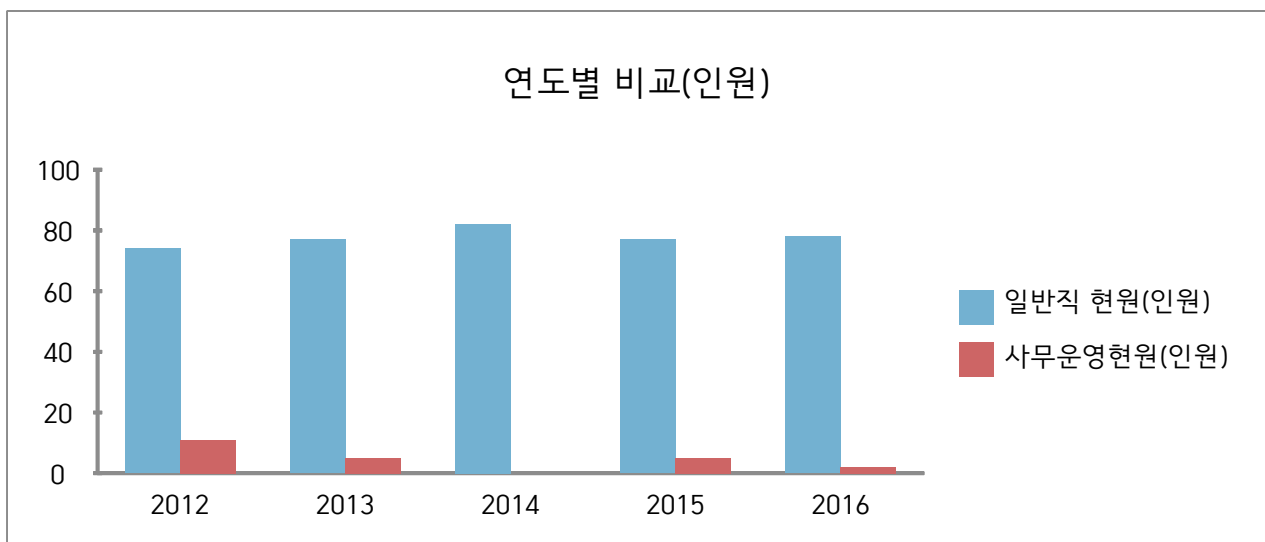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사무 운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85	84	1	4	21	33	19	6	1	
	현원	80	78	1	4	17	34	14	8	1	1
안 전 총괄실	정원	19	18		1	3	8	2	4	1	
	현원	18	17		1	3	8	3	2	1	
환 경 보전과	정원	20	20	－	1	8	8	3	－		
	현원	20	19	－	1	5	9	3	1		1
건 설과	정원	28	28	1	1	6	12	8			
	현원	26	26	1	1	5	12	4	3		
공 원 녹지과	정원	18	18		1	4	5	6	2	－	
	현원	16	16		1	4	5	4	2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직 현원(인원)	74	77	82	77	78
사무운영현원(인원)	11	5	0	5	2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남동구청
자동우량관측장비	4	남동구청, 논현1동, 간석4동, 공단소방서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	남촌동1, 논현동2, 고잔동1, 도림동1, 구월동1
재해문자전광판	4	구월동2, 만수동1, 남촌동1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남동구청외 5개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6	남동구청외 5개소
산불감시카메라	10	만월산 4, 만수산 2, 소래산 2, 오봉산 2
태양광 무인방송홍보기기	2	만월산, 소래산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8	24	24	36	3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1	1	1	1
자동우량관측장비	1	1	1	4	4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0	4	4	4	6
재해문자전광판	0	2	2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6	6	6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6	6	6	6	6
산불감시카메라	2	2	2	9	10
태양광 무인방송홍보기기	2	2	2	2	2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등

- 산불 감시카메라 및 자동우량관측장비 증설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e-재난관리일반	2016/03/01~03/2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e-재난관리일반	2016/05/01~05/2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2	
재난관리일반	2016/11/21~12/2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1	
비상대비업무의 이해	2016/05/03~05/24	지방행정연수원	1	
2016년 재난관리자원 실무담당자 권역별 교육	2016.04.28	국민안전처	1	
2016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교육	2016/05/24	인천광역시	21	
2016년 제2차 특수재난 권역별 현장순회교육	2016/06/03	국민안전처	3	
2016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교육	2016/09/27	인천광역시	20	
2016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교육	2016/10/11	인천광역시	7	
2016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교육	2016/10/28	인천광역시	7	
제2회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	2016/06/17	국민안전처	3	
재난관리일반	2016/11/01~11/22	지방행정연수원	1	
재난안전 관리자과정	2016/11/2~2016/11/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16년도 동원자원조사 전국 순회교육	2016/01/18	국민안전처	2	
2016년 지자체 재난안전 전문교육	2016/11/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5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강화 순회 토론회	2016/03/17	국민안전처	1	
자연재난피해복구비지원실무과정	2016/12/01~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16/11/01~11/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e 기후변화대응과정	2016/11/01~11/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e 화생방방호실무과정	2016/08/0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e 지질해일실무과정	2016//01~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4	
e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정	16/12/1~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e 재난안전총론	2016/12/01~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e 재해구호일반과정	2016/11/01~11/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과정	2016/08/0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6.06.02.	시청	3	구호분야 교육	전국재해 구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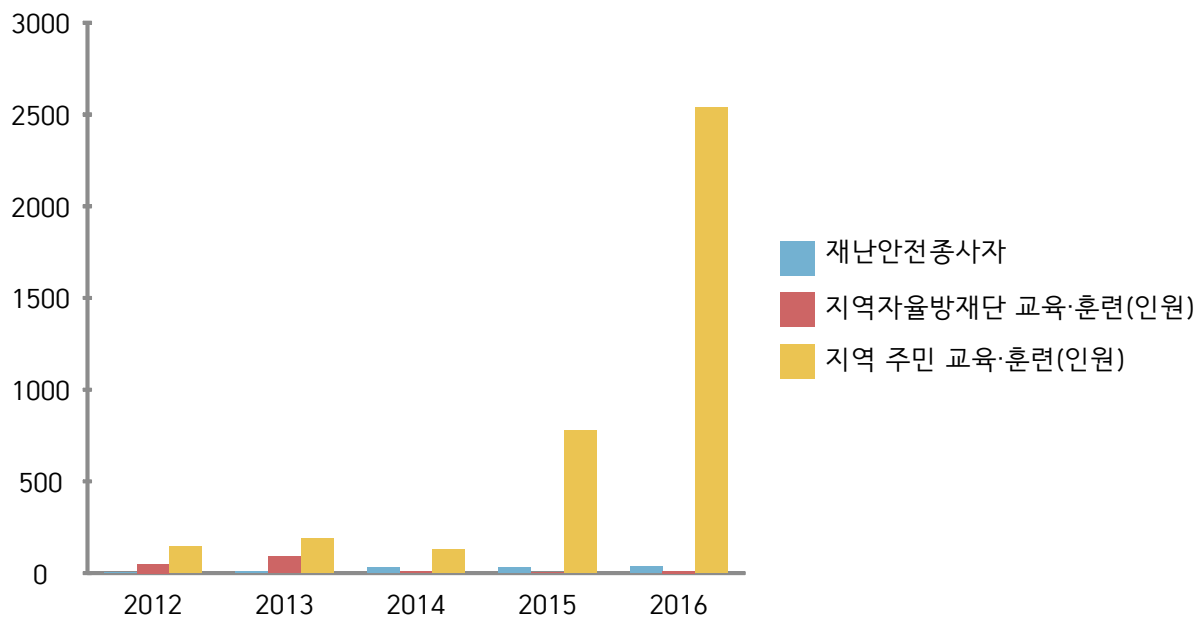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소소심 체험교육	2016.5.17	남동구청	536명	화재발생시 피난요령,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교육	남동구	
2016년 통장 및 사회단체 안전교육	2016.4.28	남동구청	280명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 재난및안전사고 예방대응능력 향상	남동구	
2016년 남동새싹 민 방위교육	2016.7.11.~2 2(10회) 2016.9.1. ~21(10회)	남동구 민방위 교육장	1,157명	응급처치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맨투맨맛춤식 체험교육 실시	남동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연중 (17회)	주민센 터 및 보건소	566명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남동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안전종사자 직무 교육(인원)	5	10	30	32	37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50	90	9	2	3
지역 주민 교육·훈련(인원)	146	189	129	779	2,539

연도별비교(교육)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6.12.5.	남동구청	27명	자체교육 및 간담회	남동구	
2016.10.25.	백범김구 기념관	9명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자치단체공무원 합 동워크숍	안전모니터봉 사단 인천시 연합회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157	663	651	8	4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날	화재, 가스 등 사고 예방 안전점검 및 홍보 등	매월4일 (연12회)	남동구 관내	890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교통문화 확산 등	2016.3.2 ~3.25(8회). 2016.9.5. ~9.22(8회)	남동구 관내	740	
3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봄철 산불예방 홍보	16. 3. 18.	소래산	18	
4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16. 11. 4.	소래산	60	
5	가을철 산불예방 2차 캠페인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16. 12. 3.	소래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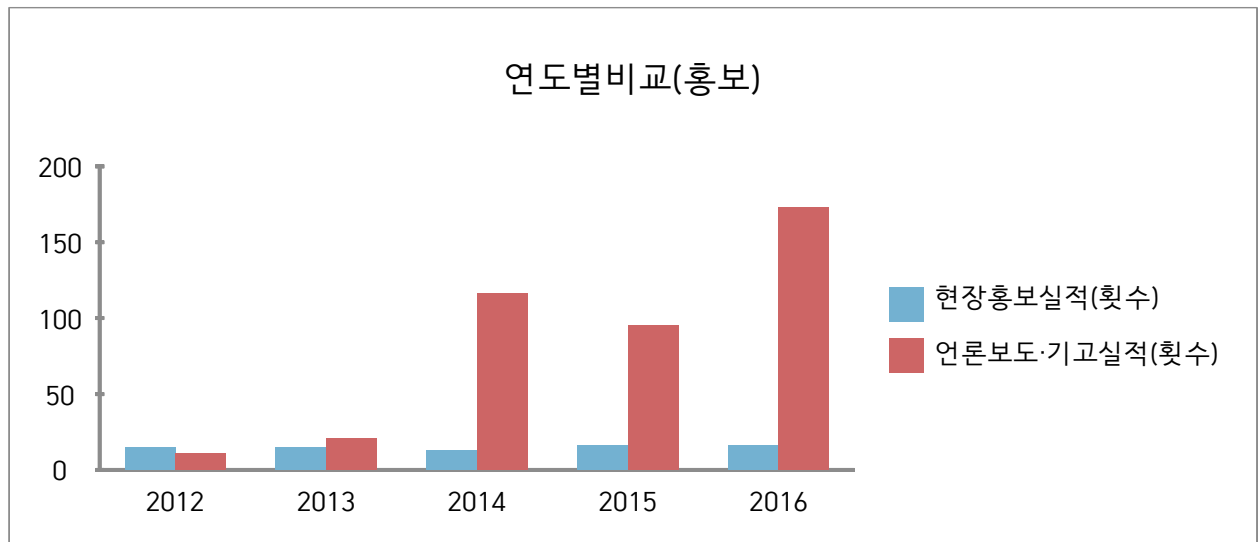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실시	남동구 안전점검의날 홍보	2016.1.5	인천일보 외 5개	
2	남동구 국가안전대진단홍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홍보	2016.2.17	경기매일 외 20개	
3	학교주변위해요소 대진단	개학철 학교주변 집중정비/단속 홍보	2016.3.7	연합뉴스 외 19개	
4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홍보	행락철 안전사고요소 점검 및 예방홍보	2016.4.5	남동뉴스 외 11개	
5	고속도로 경사지 등 취약지정비	취약지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2016.5.9	남동뉴스 외 10개	
6	여름철폭염,호우 및 안전사고예방	여름철폭염,호우대비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2016.6.8	인천뉴스 외 11개	
7	여름철대비 민,관합동 점검 실시	여름철폭염,호우대비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2016.7.5	아시아글로벌 외 15개	
8	물놀이사고 예방캠페인전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2016.8.5	동양뉴스 외 9개	
9	한가위대비 안전사고예방	명절맞이 귀성길 및 재래시장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2016.9.12	서울일보 외 9개	
10	안전문화실천 합동캠페인	인천시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2016.10.6	시대일보 외 2개	
11	산불, 사고한 부주위로발생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2016.11.7	내외일보 외 6개	
12	내 집앞 내가 쓰기 캠페인	겨울철 폭설 대비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2016.12.7	시대일보 외 2개	
13	남동구 산불방지 총력대응	봄철 산불예조심기간 홍보	2016.1.27.	현대일보 외 10개	
14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2016.3.23	일간경기 외 10개	
15	산불조심 캠페인	산림보호 캠페인 실시	2016.4.7	내외일보 외 7개	
16	남동구 산불방지 총력대응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2016.11.1	경인종합뉴스 등 11개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장홍보실적(횟수)	15	15	13	16	16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1	21	116	95	173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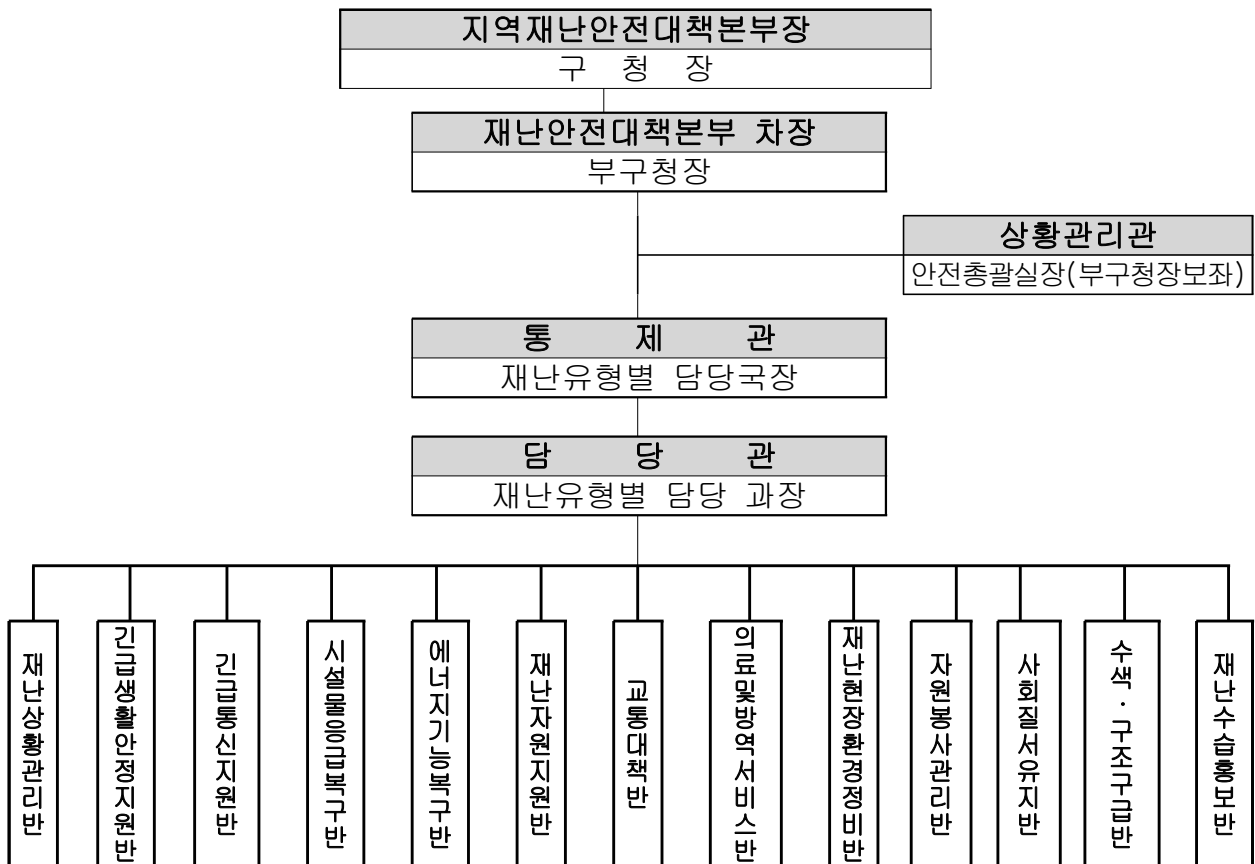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구청장 • 위 원 : 22인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내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13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구청장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안전총괄실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산불방지 대책본부	산림보호법 제30조 제2항	• 공원녹지과	• 산불대책 수립 • 산불감시 • 산불신고 접수 • 산불 진화 • 산불예방 홍보 활동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산불진화용품 관리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산림보호법 제45조4 제1항	• 공원녹지과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 • 비상사태 시 지역주민대피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산사태 지역 복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재난상황관리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실)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복지정책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홍보미디어실)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건설과, 농축수산과, 문화체육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생활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자원 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안전총괄실)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청소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복지정책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남동경찰서)

○ 화재·구조·구급 : 재난지역 화재·구조·구급 지원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

* 화재진입,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이송 등 소방총괄관리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홍보미디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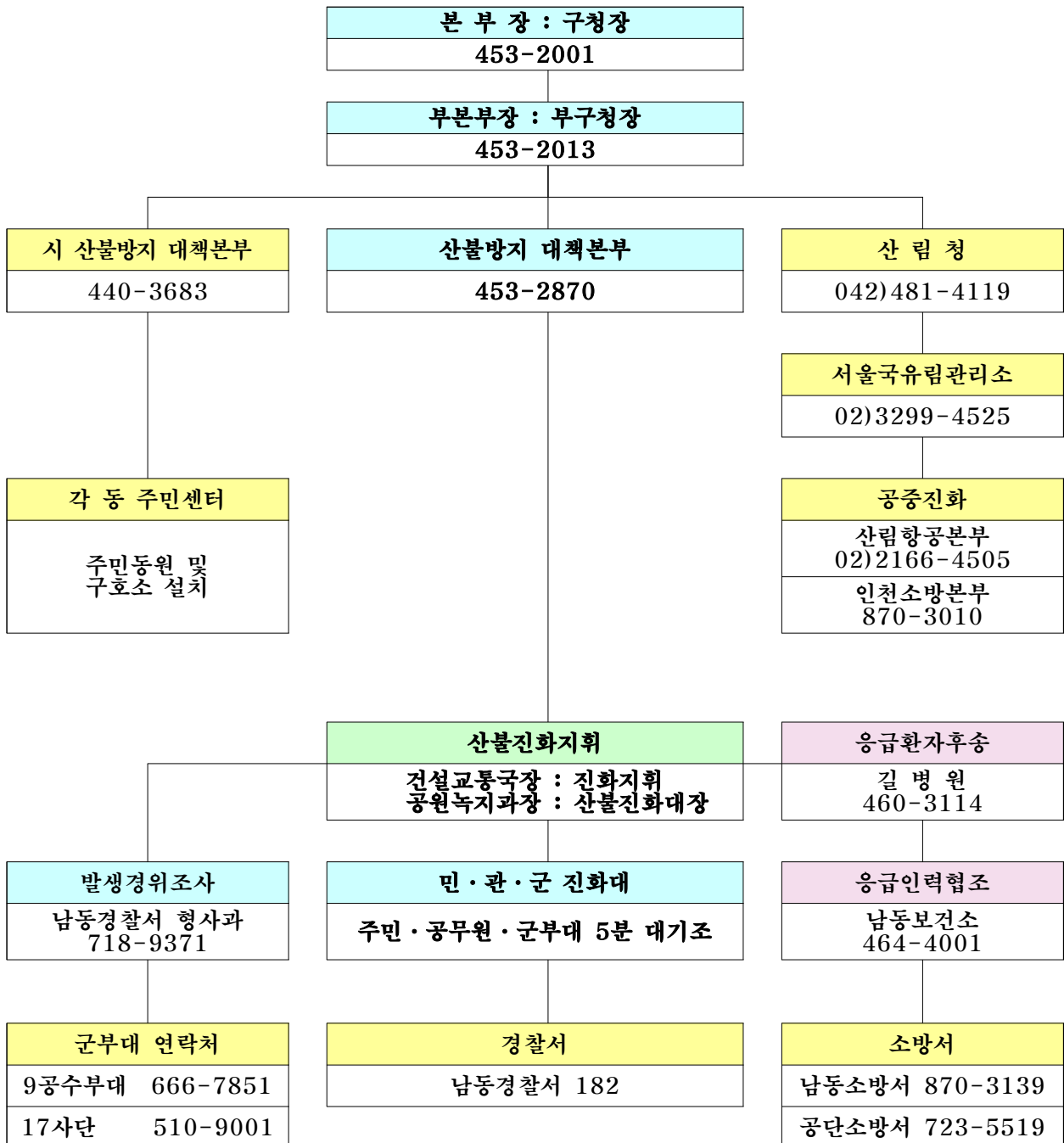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산불 발생]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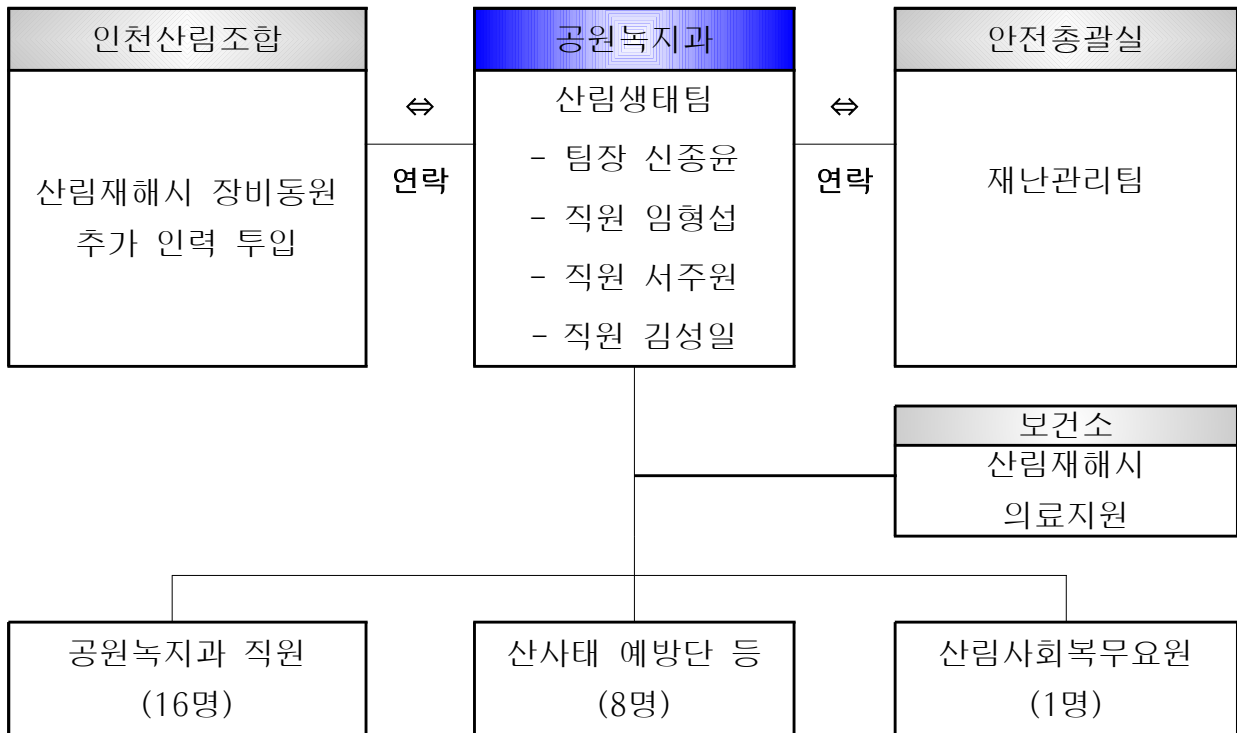
구 분	업 무 주관과	주관부서 전화번호	fax	비고
청 장	산불방지과	042-481-4250	042-481-4260 4235	
차 장	"	"	"	
산림보호국장	"	"	"	
산불방지과장	"	"	"	
산불정책	"	042-481-4251	"	
산불예방	"	042-481-4255	"	
산불진화조사	"	042-481-4257	"	
산림항공안전	"	042-481-4259	"	

□ 산불재난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연 락 처	유관기관	연 락 처
시 산 불 상 황 실	440-3683	1 7 사 단	521-1113
남 동 소 방 서	(주간)870-3139 (야간)870-5280	한전(신인천전력소)	(주간)570-7351~2 (야간)570-7461~6
공 단 소 방 서	(주간)723-5534 (야간)723-5519	산 불 상 황 실 (산 림 청)	042-481-4119
남 동 경 찰 서	718-9371	부 평 구 산 불 상 황 실	032)509-6980
9 공 수 여 단	620-6410	시 흥 시 산 불 상 황 실	031)310-2340

[산사태]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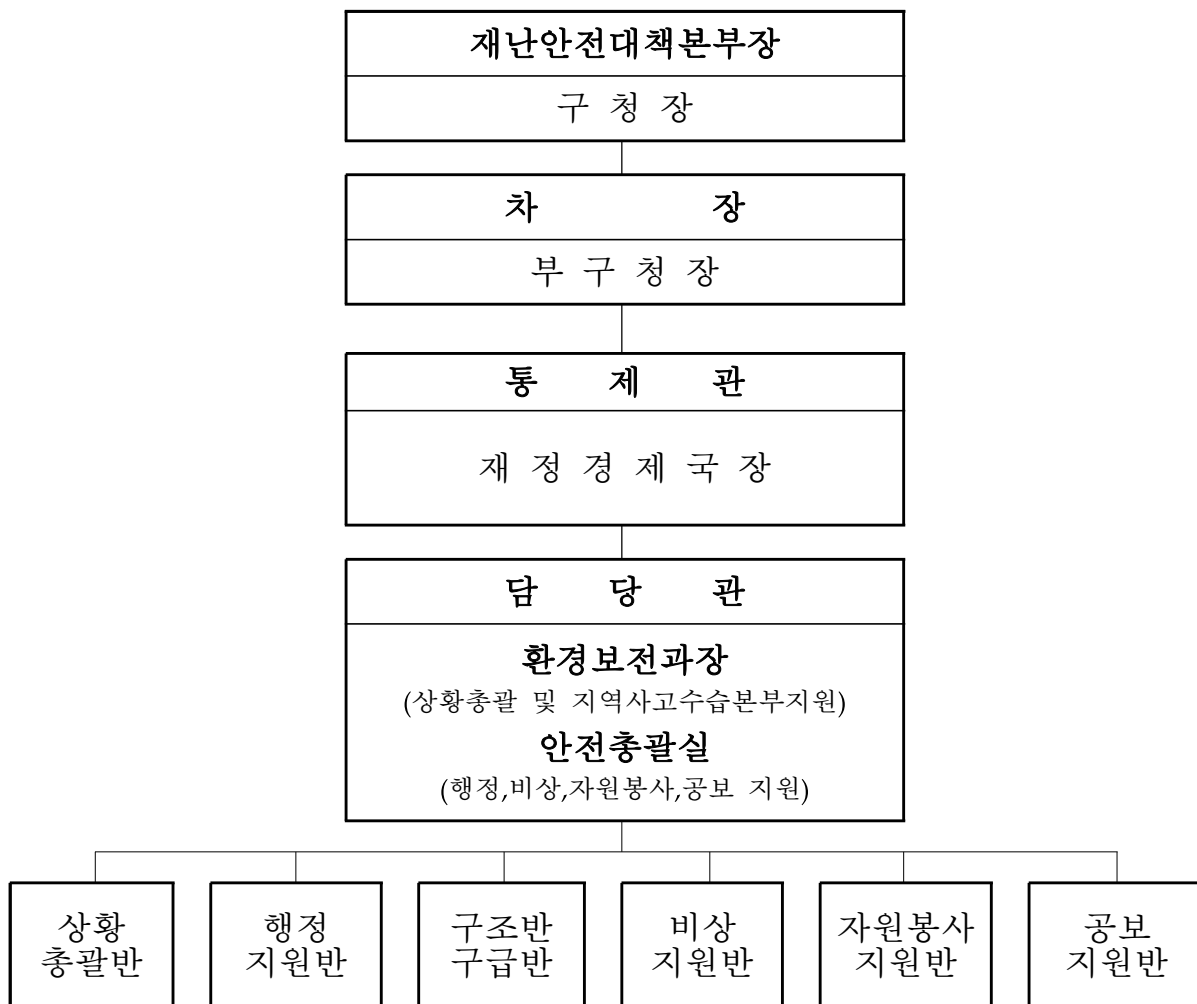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남동소방서	870-3139	한국가스 안전공사	435-1525 ~ 8
남동경찰서	718-9329	인천도시가스(주)	570-7942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831-7123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815-5015
남동수도사업소	720-3447	육군제7851부대 (9공수여단)	620-6410 666-7851(휴일,야간)
한국전기안전공사	440-6811	육군제2291부대 (17사단)	515-7113

[유해화학물질], [수질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기능

구 분	비 상 단 계 임 무
통 제 관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본부장, 차장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반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 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처리

구 분	비 상 단 계 임 무
	○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 긴급상황 관리 (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 ○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시 보고자료 작성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정지원반	○ 근무명령 발령 (공문발송 전 해당 실과 서무에게 유선통보 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 ○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자료 작성 ○ 당일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각종 회의 준비 및 개최 ○ 현장상황관리관 및 시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근무 및 근무체계 개선 및 근무수칙 보완 등 ○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별로 피해 및 응급복구 종합상황을 해당 구·군 홈페이지의 재난관련 코너에 게시토록 독려 ○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상황 관리 ○ 유관기관 구조구급 협조체계 가동 ○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구조요원 등)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비상지원반	○ 관련실과 및 파견기관별 소관현황 파악 ○ 파견기관의 언론보도·정보사항 등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 파견 기관별 상황대처 관련 각종 회의, 대책, 지침, 지시사항 등에 대한 자치 단체·관련기관의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 파악

구 분	비 상 단 계 임 무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 운영 지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자 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 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확인 ○ 시민 공지가 필요한 주요사항 상황관리 ● 철도, 교량, 도로, 항공 등 교통통제 및 해제 사항 ●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 피해지역 응급조치상황 등 ○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자원봉사 지원반	○ 구·군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분·배치(지원내용, 인력, 필요장비 등 양식 작성) ※ 단순인력과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배분·배치하고,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도구, 장비 등 사전준비 ○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 ○ 타 시·도 자원봉사 지원 ○ 그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공보지원반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자막방송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 라디오, 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각종 TV, 라디오 인터뷰 전담 ○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 단 체 별	협 조 · 지 원 사 항	연락처(☎)
남동경찰서	○ 차량통제 및 교통관리 지원 ○ 현장출입통제 지원	718-3294
인천남동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에 긴급구조 지휘·통제	870-5280 723-5519
인천 동부지원교육청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교육 ○ 각급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 구	460-6114
육군제7851부대	○ 인력 및 장비지원	889-6119
남동수도사업소	○ 단수 및 비상급수 대책	720-3516
인천상공회의소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입주지원)	○ 재난예방 안전점검 지원 ○ 재난대비 안전의식 교육강화 ○ 재난업무 지원 및 협조	810-2800 810-9344 070- 8895-7437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 전력차단 및 공급 ○ 비상발전기, 조명등 설치	830-5267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 정기적인 안전점검	440-6863
KT인천지사	○ 긴급전화 가설	426-9001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사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인천지역본부	○ 가스차단 및 공급 ○ 정기적인 안전점검	420-3126 570-7942 834-3002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439-7272 437-3381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 구호물자 지원 및 구급교육 지원·협조	810-1332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 현장의료소 설치 ○ 응급환자분류 및 응급조치	460-2158
남동모범운전자회 해병대인천남동구전우회	○ 경상자 후송 차량 지원 ○ 재난현장 교통질서 계도 ○ 인력지원	463-6880 466-7679
남동구여성단체협의회	○ 재난현장 자원봉사	446-3320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 리에 필요한 사항규정	2005.02.2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 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8.10.2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05.11.25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02.2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 사전협의 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규정	2007.09.28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7.08.0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2.12.31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 규정	2014.03.1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2013.05.1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 는 사태에 대해 세부 대응절차 와 조치사항 및 유관기관 협조 사항 규정	2013.5.2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 관리 행동매뉴얼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 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 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2014.1.6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행동매뉴얼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 양오염사고 대비 범정부적 위 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 향 규정	2014.6.30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보건 의료	길병원	지하5층, 지상18층 대지면적 6,828.9㎡, 연면적 15,225.33㎡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2013. 10.31	해당사항없음	보건 복지부
교통 수송	인천교통 공사	지하3층, 지상8층 대지 222,376㎡ 연면적 23,135㎡	인천교통 공사	2015.10	해당사항없음	
식용수	수산정수 사업소	지하1층, 지상3층 대지 216,267㎡ 연면적 19,327㎡	수산정수 사업소	2015.10	해당사항없음	주8동 부16동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총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교량	육교	지하차도	소계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	기타	
664	21	4	16	1	643	11	464	76	42	24	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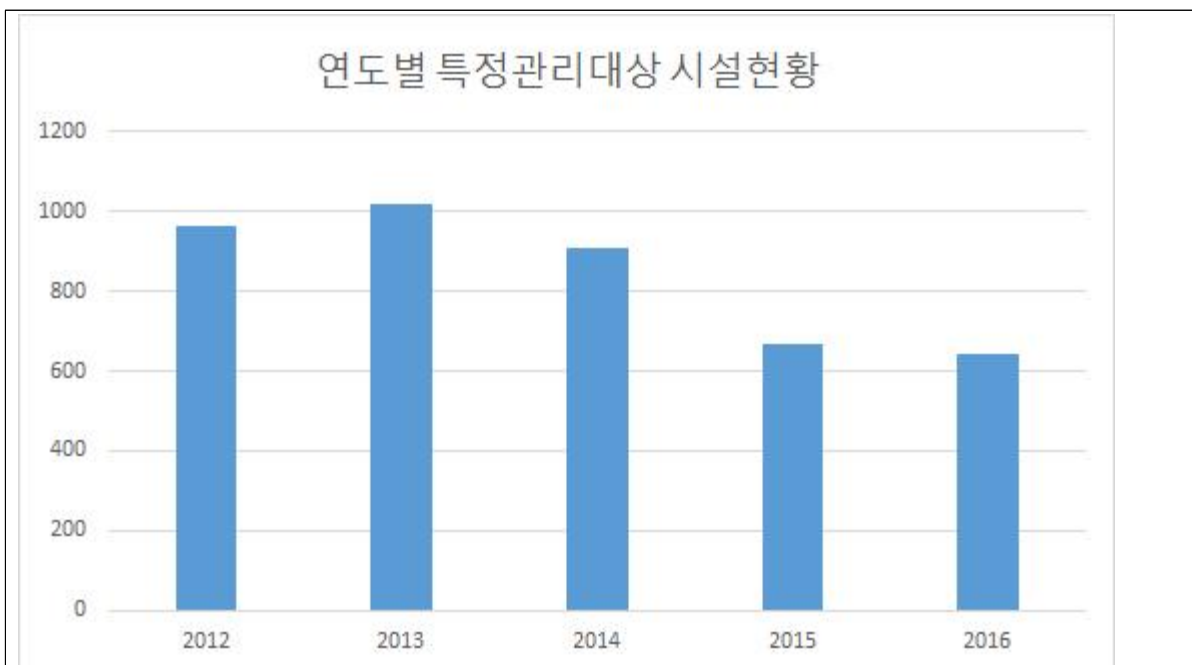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664	644	325	535	43	1	-	1	
시설물	21	21	-	18	3	-	-	-	
건축물	643	643	103	504	35	1	-	1	

-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 **A등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이상이 없는 시설)
- ※ **B등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 ※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한 시설
-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시설
- ※ **E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시설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정관리대상시설등	965	1,021	907	669	664
재난위험시설	1	21	4	1	1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및 재난위험시설 감소 원인

- 지침 개정(2014.7.)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적용 대상 변경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기타	간석동 44-1 단독주택	지상1층/지하 0층 단독주택	개인	2013. 08.27	보수·보강 또는 철거			
기타	구월동 7-3 우주파크 빌 A동	지상1층/지상 5층 옹벽	개인	2015. 10.07	보수·보강	27	보수· 보강	2016

☞ 해소기간 경과시설물(건축물) 미해소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소유자 개인 사정에 의한 보수·보강 미 실시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2016.1.18. ~ 6.20.	664	664	29	각시설 관리부서 담당자	29건 조치완료
하반기	2016.9.1. ~ 11.20.	664	664	17	각 시설 관리부 서 담당자	16건 조치완료, 1건 향후조치 (2017년 예산반영 통하여 조치예정)

[정비실적]

시설 유형	시설명	관리 주체	지정일자	해소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교량	수현교 외 16개소	공공	20000329	20161214	266	난간보수
대형건축공 사장	한내들퍼스티 지아파트 신축공사장	민간	20150427	20160719		안전난간 설치 완료
대형건축공 사장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공사장	민간	20150331	20160719		차량통행로 가설발판 정리
대형건축공 사장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신축공사장	민간	20150630	20160719		지하주차장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난간 설치, 가설계단 파이프 캡 설치
대형건축물	논현종합사회 복지관	공공	20131120	20160707		옥상 방수공사 완료
공공청사	구청사	공공	20000329	20161107	8	균열 피막보수제(퍼티)작업으로 마감처리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 실	공공	20000329	20161128	8	계단실(복도)의 균열보수
대형건축공 사장	한양수자인아 르디에 신축공사장	민간	20150827	20161020		계단실 난간대 설치
대형건축공 사장	이안라운파미 에하우스 신축공사장	민간	20151127	20161020		이동식비계상부 난간대 설치, 지하주차장 추락방지망 설치
대형건축공 사장	논현유승한내 들아파트 신축공사장	민간	20151030	20161020		계단실 난간대 설치, 집수정커버 재설치
공공청사	의회	공공	20000329	20161107	8	외벽 타일 균열 보수

☞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상반기 남동구 관내 도로 시설물 정기점검용역	관내	수현교 외 22개소	2016.3.21. ~ 6.17	54	시설물 안전점검
하반기 남동구 관내 도로 시설물 정기점검용역	관내	수현교 외 22개소	2016.11.15 ~2017.2.22	56	시설물 안전점검
관내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관내	하수도 정비 및 준설	2016.2.26 ~ 12.15	1,437	관내 하수도시설 정비
소래·논현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소래· 논현 공동구	공동구 유지관리	2016.1.1 ~ 12.31 ※총용역 기간 '16년~'20년	800 ※총 용역비 4,000	공동구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구월· 소래· 남동 배수 펌프장	펌프교체 제진기정비 ALTS 교체	2016.3.1 ~ 12.27	825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재난 예경 보시 스템 6종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2016.1.1 ~ 12.31	5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유수지 및 수문관리	관내 유수지 및 수문	유수지 및 수문 유지관리	2016.1.1 ~ 12.31	3	유수지 및 수문 유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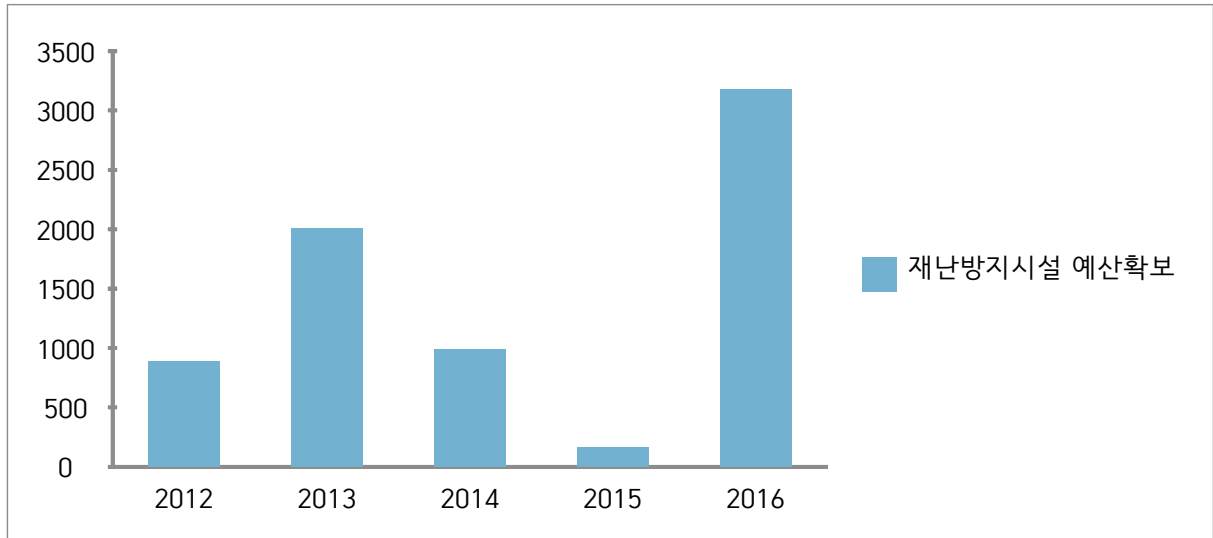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낙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 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작성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본예산, 추가경정 예산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888	2011	990	160	3,180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
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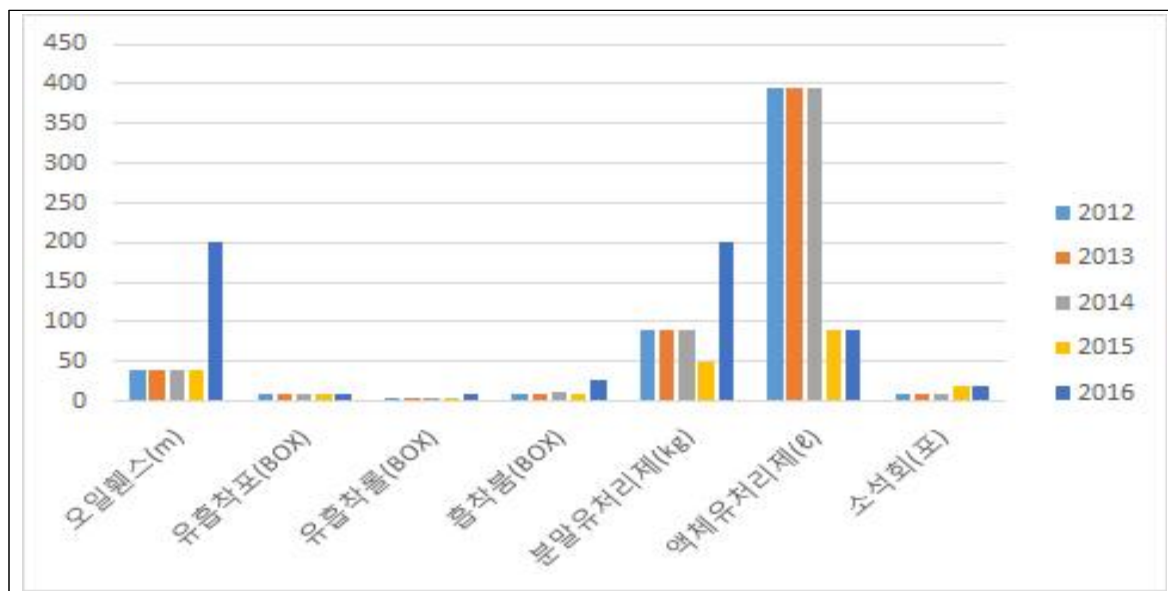
오일 웬스	흡착포	흡착물	흡착분	유처리제 (고상)	유처리제 (액상)	소석회
m	BOX	BOX	BOX	kg	ℓ	포
200	10	10	28	200	90	18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660	1,502	2,082	31	6,188	1
의료기관	659	1,497	2,065	30	6,188	1
보 건 소	1	5	17	1	—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오일웬스(m)	40	40	40	40	200
유흡착포(BOX)	9	8	10	8	10
유흡착롤(BOX)	3	3	4	4	10
흡착붐(BOX)	8	8	11	9	28
분말유처리제(kg)	90	90	90	50	200
액체유처리제(ℓ)	396	396	396	90	90
소석회(포)	10	10	10	2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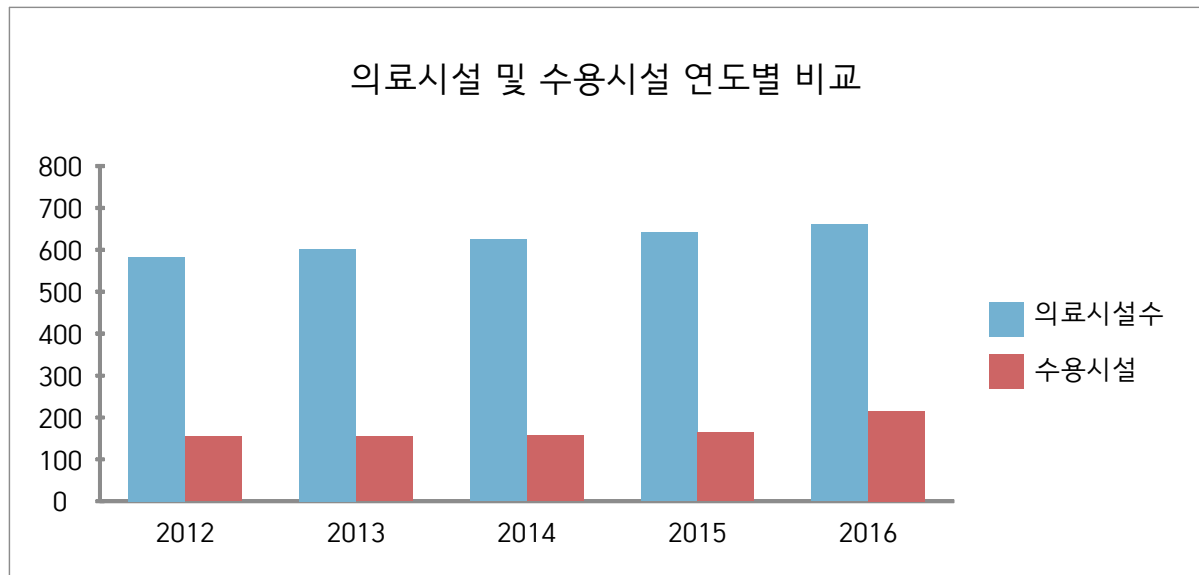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방제훈련(작업) 등으로 인한 흡착포 등 사용
- 노후화된 유처리제, 소석회 등 폐기처리
- 방제용품 추가 구입 등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료시설수		583	602	625	641	660
수용시설	개소	155	155	157	164	216
	수용인원	7,430	7,430	7,568	7,934	53,036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 공작차	배연차	헬기	구급차	기타
총계	31					31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 우저	청소차	기타
총계	66	1	16	12	7	30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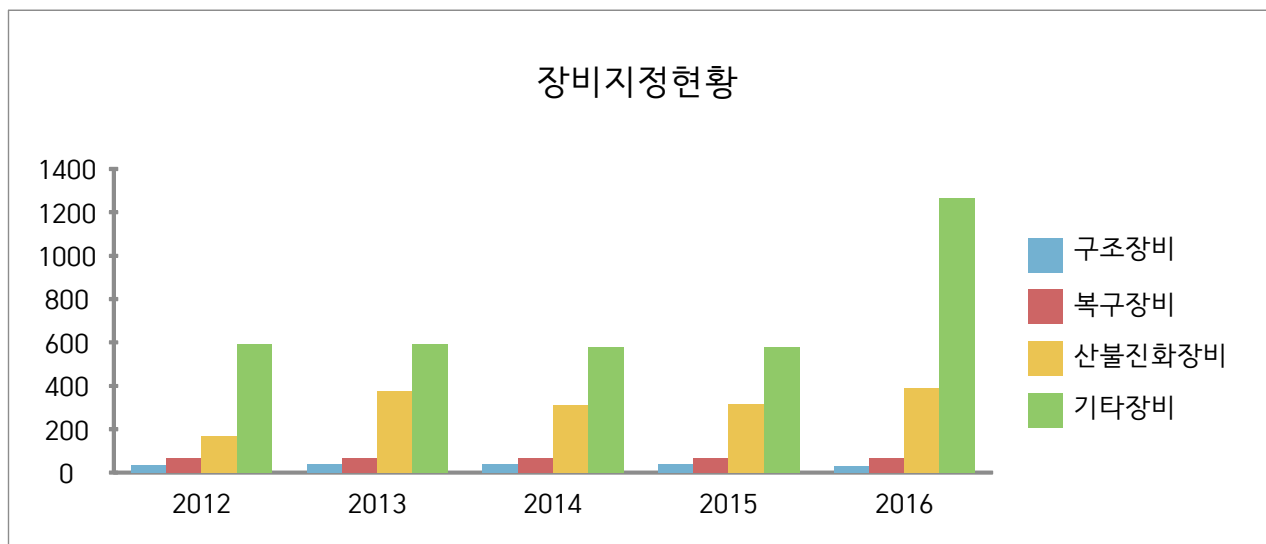
구분	계	감시 카메라	무전기	등짐 펌프	갈퀴	기계화 세트	진화 차량	기타
총계	388	10	35	107	215	1	3	17

◆ 기타장비

구분	계	기계톱	삽	양수기	비고
총계	1,266	11	762	49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조장비	37	39	39	39	31
복구장비	65	66	66	66	66
산불진화장비	168	374	310	317	388
기타장비	595	594	579	579	1,266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삽 추가 구매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35	2	-	-	2	-	4	-	27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 공	기계 공	통신 공	착암 공	절단 공	용접 공	철근 공	배관공
인원	92	16	61	13	-	-	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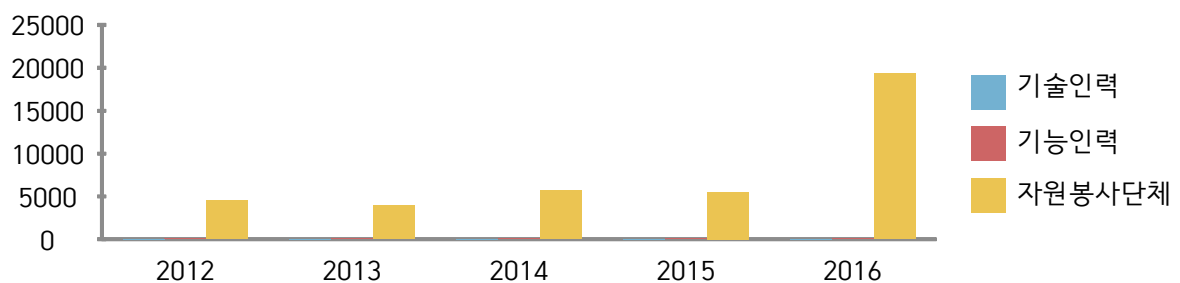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 대	산악 구조 대	수중 구조 대	아마 추어 무선 봉사 대	기타	적십 자봉 사대	새마 을부 녀회	해병 전우 회	모범 운전 자회	여성단 체협의 회	기타
인원	19,338	163	0	0	40	-	600	649	250	90	1,704	15,84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술인력	53	42	42	35	35
기능인력	93	92	92	92	9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4,507	3,925	5,723	5,523	19,338

연도별 기술,기능,단체현황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통한 인원 증가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합동점검	2016.4.1.~4.5	시 재난대응복구과, 국민안전처	장려	
재난관리 실태점검	2017.1.4.~2.17	시 재난대응복구과, 국민안전처	최우수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합동점검	2016.10.19.~10.20	시 재난대응복구과, 국민안전처	보통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최우수, 우수, 장려)·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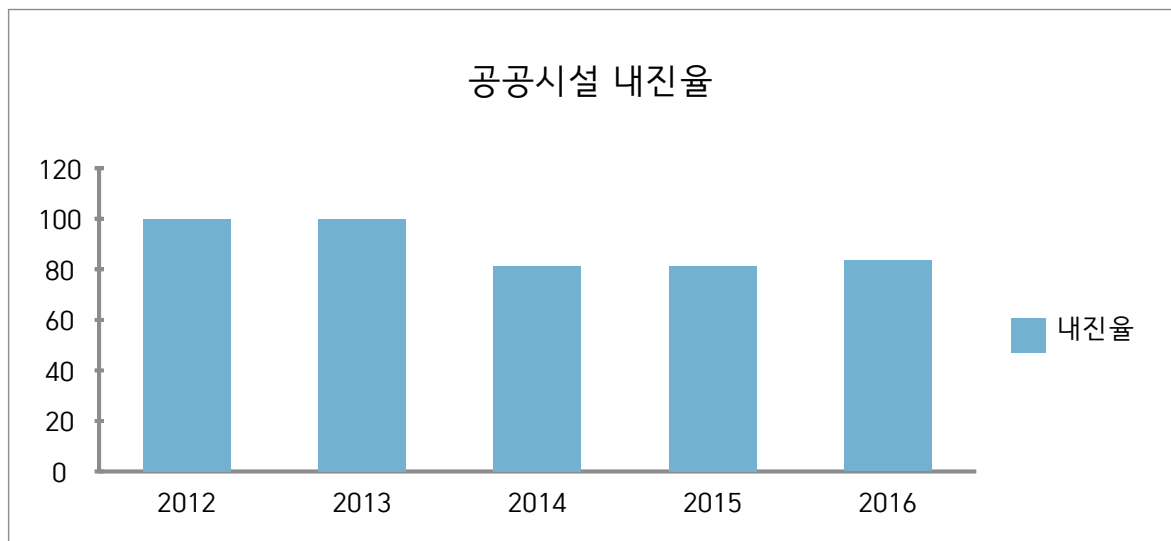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6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건축물	38	34	0	0	89.4
도로시설물	6	0	0	0	0
공동구	1	1			100
병원시설	22	21	0	0	95.4

-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내진율	100	100	81.5	81.5	83.5



☞ 2016년 전수조사 실시 내진율 재산정

: 금년도 예산 미확보로 인한 내진 보강 미 시행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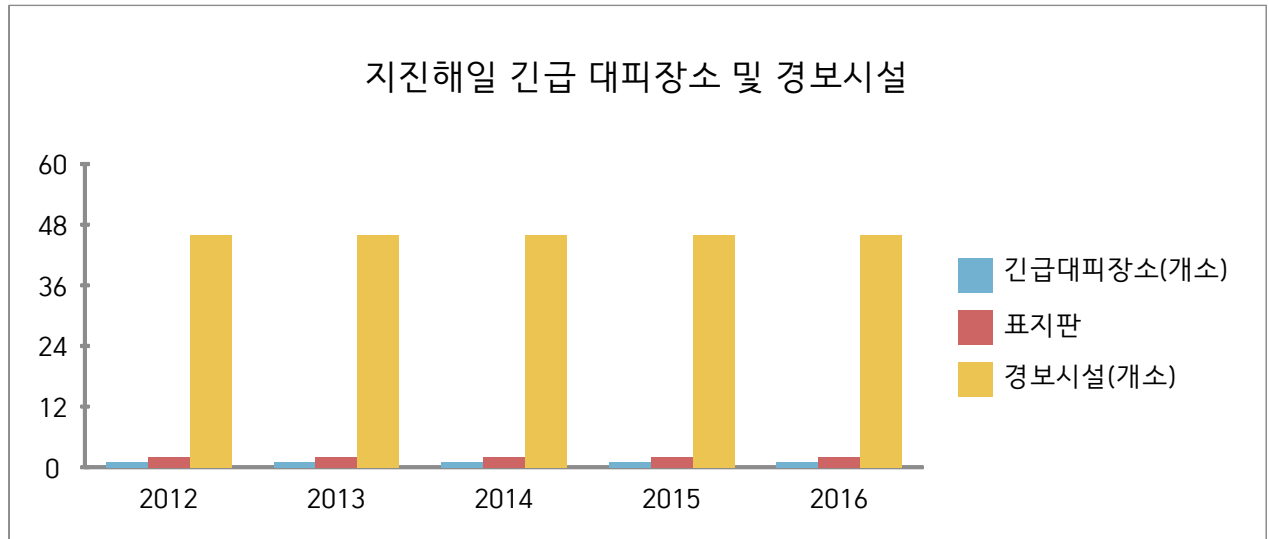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치	2016 설치 완료
종합상황실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치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 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남동구	남동구청(1)	2	1	0	1	46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	-	-	-	-
지구수(개소)		46	46	46	46	46
긴급대피장소(개소)		1	1	1	1	1
표 지 판	안내표지판	1	1	1	1	1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0	0	0	0	0
	대피로 표지판	1	1	1	1	1
경보시설(개소)		46	46	46	46	46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029백만원	1,029백만원	1,029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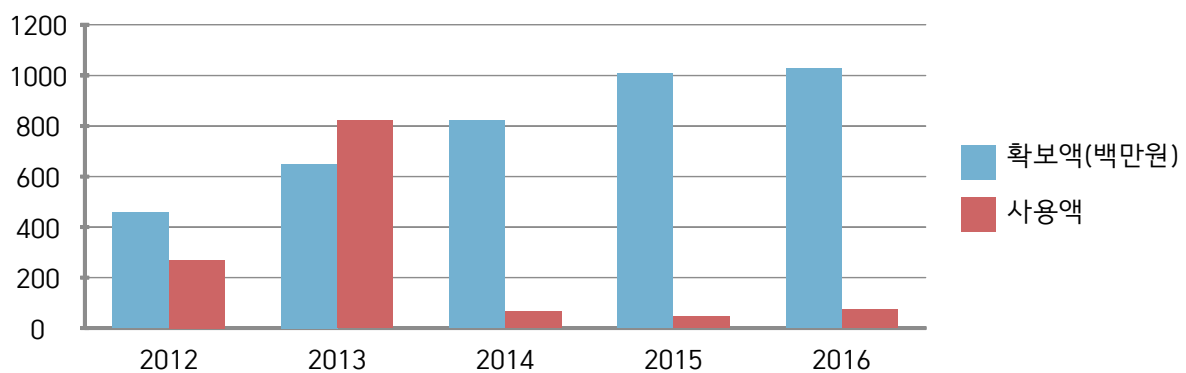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확보액(백만원)		457	649	821	1,006	1,029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74	686	32	37	12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31	0	0	0	0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140	53	9	1	32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0	0	0	0	29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0	0	0	0	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5	82	3	1	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0	0	0	0	0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0	0	21	8	0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및 사용액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3년	풍수해 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년	지진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대형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년	대형 화산 폭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수산과	2014년	적조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5년	산불예방 산불방지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매뉴얼	공원녹지과	2015년	산사태예방 및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3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대응 및 대비 지침
대규모 수질오염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4년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응 및 대비 지침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4년	해상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대비 지침
공동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건설과	2013년	공동구 재난으로 인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5년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의 발생할 우려 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수산과		가축질병의 발생에 대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건행정과	2011년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2년	보건의료분야(의료기관 서비스 중단)에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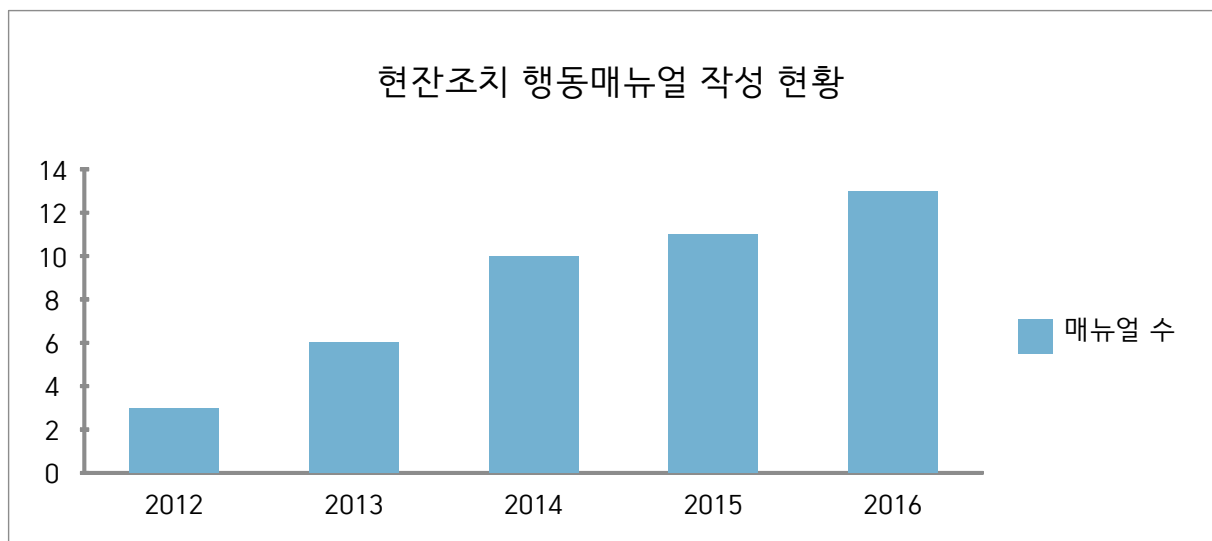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용	비고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01.09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01.09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대형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01.09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12.23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12.01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12.21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대규모 수질오염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12.26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01.11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공동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016.12.20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01.09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11.18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016.11.15	행동매뉴얼의 행동절차화 추진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산불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6.5.19	남동구 소재 오봉산 산불재난을 가상의 현장훈련	·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방제 대응능력 배양	
공동구 현장조치 행 동 매뉴얼	2016.6.10 ./6.22/10 .5/12.16 (4회)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화재사고를 가상의 현 장훈련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능력 점검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 관리 행동매뉴얼	2016.4.26	가상의 유류 유출로 인 한 수질오염사고를 설 정하고 오염물질 확산 방지·제거, 보고수행 절차 및 방제장비의 정확한 사용 방법과 숙달 위주의 현장 업 무 중심으로 실시	· 수질오염물질 하천 유입 시 효율적인 방제 대응 능력 배양 ·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방제물품 정비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뉴얼 수	3	6	10	11	13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실무담당자가 바뀌어도 누구나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 하도록 매뉴얼 작성 대상 확대
- 산사태 현장조치 매뉴얼 제외
- 적조, 가축질병,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추가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그룹)
진단결과	0.349	0.648	0.855	0.517	4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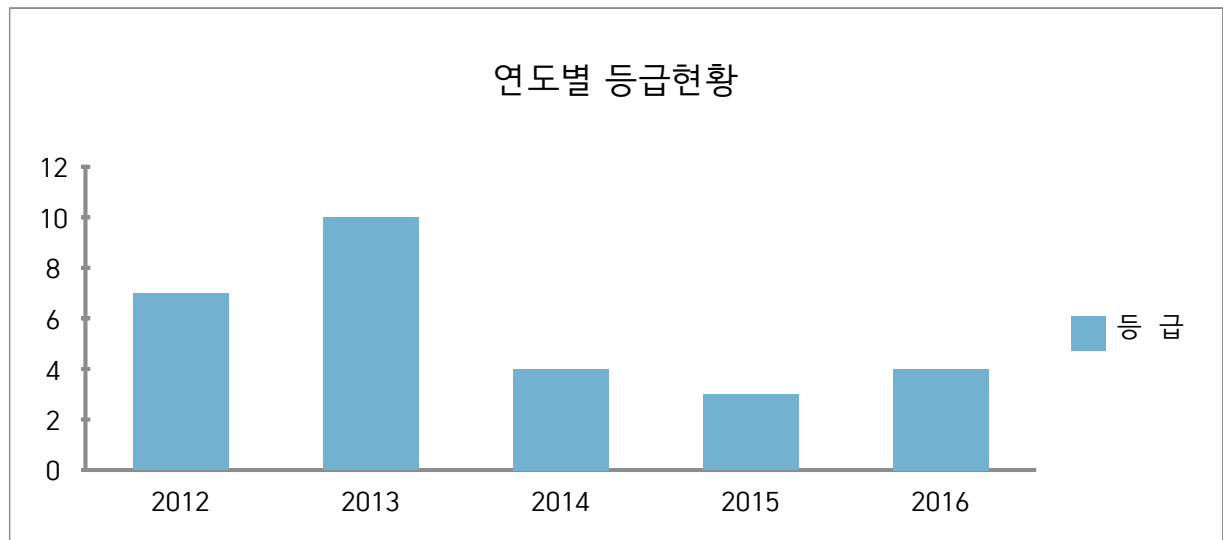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등 급	7	10	4	3	4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위험환경과 위험관리 능력 실적은 향상되었으나 지역안전도 지수가 '15년도 0.495에서 → ' 16년도 0.517로 하락하여 안전도 등급이 '15년도 3등급 → 4등급으로 1등급 감소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동구 안전총괄실(담당자 : 하성철, 전화 : 032)453-231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4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3월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5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 명 칭: 아단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 사업 규모
 - － 대지면적: 1,415.4㎡
 - － 건축규모: 배드민턴장(건축면적 628.77㎡, 연면적 628.77㎡, 지상 1층)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성 명: 남동구청장
 -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지조서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목	공 부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만수동	35	대	661.0	6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2	만수동	35-1	도로	70.2	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3	만수동	33-2	공원	323.5	32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4	만수동	36-1	공원	24.4	2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5	만수동	37-1	공원	336.3	33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소래갯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3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 『소래갯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8-1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A=9,929㎡(체육시설 조성)
 라. 사 업 기 간: 2018. 12. 31까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공고기간: 2017. 03. 30. ~ 2017. 04. 13.

3. 보상시기: 2016. 03. 31.까지

4. 보상대상

- 토 지: 소래갯길일원 체육시설 조성 편입토지(1필지)

5. 공시송달자

연번	구분	성 명	(등기부)주소	등기번호	결과	사 유	비 고
1	소유자	배○○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	1899686271657	반송	폐문부재	

6. 보상절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개별 보상협의 체결 후 현금보상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공영개발사업단(☎032-453-5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50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3월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2017. 3. 31 ~ 2017. 4. 15
 4.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공고기간 내
 - 나. 보상시기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비를 계약체결 후 지급
 - 다. 협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032) 453 - 2712)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토 지: 신분증1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통장사본
 - 지장물: 신분증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통장사본, 지장물소유확인서
- ※ 보상대상 토지의 근저당,(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전 해지 후 협의

5. 공시송달 내역

○ 토지

순번	동명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장수동	59-9	도	24*431. 48/3129	최*락	인천 남동구 담방로 20, ***동***호	용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번길 **	
		60-14	도	25			부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	
2	장수동	59-9	도	24*2697. 52/3129 *1/2	김*호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00 ***동 ****호	남인천 *****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	
		59-8	전	42					
		59-7	전	3					
3	장수동	123-7	답	74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123-11	답	6					

○ 지장물

순번	동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장수동	59-1	담장	동바리,망 H1.8	김*호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00 ***동 ****호	남인천 *****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	
			수목	단풍나무 H3.0xB35					
			수목	웃나무					
2	장수동	123-7	바닥	목재데크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조경석	0.5x0.5					
			담장	목재 H0.5					
			수목	느티나무 H8.0xB50					
			기타동산	전기시설등					

6. 기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65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동넉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년4월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동넉지구 소3-1호선)
 - 명 칭: 동넉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3-1호선 B=6.0m, L=454.46m
4.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1번지 일원
5. 보상시기: 2017. 6월 ~
6. 보상금지급처: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논현동44-15번지 외 21
 - 지 장 물: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2017. 4. 3. - 2017. 4. 21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32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동녘지구 소3-1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동녘지구 소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설과(☎453-272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3. 3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동녘지구 소3-1호선)
 - 명 칭: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소로3-1호선 B=6.0m, L=454.46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실시계획 고시일 ~ 2018.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별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행	소로	3	1	6	국지	454.46	대1-20 논현동 26-6	소3-2 논현동 5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일부 변경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집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논현동	51-3	대	9	9	곽**	연수구 연수동 ***-* *층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변경없음
2	논현동	50-7	대	14	14	김*	남동구 논현동 ***-*	남동농업협 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변경없음
3	논현동	50-6	대	6	6	김*	남동구 논현동 ***-*	남동농업협 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변경없음
4	논현동	530	도	2,018	869	국	건설교통부				변경없음
5	논현동	49-4	전	39	39	강**	연수구 동춘동 ***-* 대우*차아파트 ***-***				변경없음
6	논현동	49-6	대	1	1	강**	연수구 동춘동 ***-* 대우*차아파트 ***-***				변경없음
7	논현동	49-7	도	16	16	강**	연수구 동춘동 ***-* 대우*차아파트 ***-***				변경없음
8	논현동	49-5	전	29	29	강**	연수구 동춘동 ***-* 대우*차아파트 ***-***				변경없음
9	논현동	44-15	답	6	6	안**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10	논현동	44-17	도	4	4	안**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11	논현동	44-16	답	5	5	안**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12	논현동	44-14	답	6	6	안**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13	논현동	45-5	대	1	1	김**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14	논현동	45-6	도	2	2	강**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15	논현동	45-4	대	1	1	강**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16	논현동	44-12	과	10	10	이**	용인시 ****호 처인구 김량장동*-* 현대아파트***동				변경없음
17	논현동	44-13	과	3	3	이**	용인시 ****호 처인구 김량장동*-* 현대아파트***동				변경없음
18	논현동	40-12	도	1	1	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 (인천 소래지점)	근저당권	변경없음
19	논현동	40-10	대	8	8		남동구 은봉로***번길 **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 (인천 소래지점)	근저당권	당초
19	논현동	40-13	대	3	1	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변경
19-1	논현동	40-14	대	1	1	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변경
20	논현동	40-11	도	41	41	최**	남동구 논현동 **				당초
20	논현동	40-11	도	40	40	최**	남동구 논현동 **				변경
21	논현동	40-9	대	7	7	이**	남동구 항박외로 ***동****호	부안수산업 협동조합 남해군수산 업협동조합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 경남남해군미조면미조로***	근저당권	변경없음
22	논현동	38-12	대	33	33	김**	남동구 은봉로***번길 *-* *층				변경없음

23	논현동	38-10	대	65	65	김**	남동구 은봉로***번길 **-* *층	주식회사국 민은행 주식회사모 아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동암 지점) 남구경인로***	근저당권	변경없음
24	논현동	38-17	대	154	154	이**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25	논현동	22-16	임	44	44	이**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호	인천 산림조합	남동구 소래로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없음
26	논현동	29-2	도	29	29	국	건설교통부				변경없음
27	논현동	29-4	임	1	1	국	재정경제부				변경없음
28	논현동	29-15	임	16	16	국	재정경제부				변경없음
29	논현동	52-4	전	17	17	조**	전라북도 정읍시 보화*길 **-*	정읍농업 협동조합	전북 정읍시 연지동*****(중 암지점)	근저당권	변경없음
30	논현동	34-47	전	1	1	김**	남동구 은봉로***번길 **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장승로**(논현지점)	근저당권	변경없음
31	논현동	34-48	전	111	111	김**	남동구 은봉로***번길 **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장승로**(논현지점)	근저당권	변경없음
32	논현동	34-46	과	206	206	이**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33	논현동	36-8	전	6	6	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변경없음
34	논현동	36-6	전	207	207	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변경없음
35	논현동	37-1	전	94	94	강**	남동구 은봉로 ***번길 **(논현동)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장승로 ***(도화지점)	근저당권	변경없음
36	논현동	36-7	전	2	2	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없음
37	논현동	36-5	답	117	117	최**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38	논현동	38-13	대	1	1	최**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동***호				변경없음
39	논현동	38-20	도	62	62	최**	남동구 논현동 ***-				변경없음
40	논현동	38-14	대	1	1	최**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동***호				변경없음
41	논현동	38-8	대	3	3	이**	남동구 함박외로 ***동****호				변경없음
42	논현동	38-15	대	83	83	최**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동***호				변경없음
43	논현동	38-18	대	7	7	윤**	남동구 논현동***-				변경없음
44	논현동	29-13	도	1	1	이**	남동구 논현동***-				변경없음
45	논현동	30-3	도	6	6	이**	남동구 논현동***-				변경없음
46	논현동	30-4	창	23	23	이**	남동구 논현동***-				변경없음
47	논현동	29-12	과	284	284	이**	남동구 논현동***-				변경없음
48	논현동	29-14	과	22	22	공	인천광역시				변경없음
49	논현동	29-9	도	54	54	국	건설교통부				변경없음
50	논현동	27-5	전	1	1	공	인천광역시				변경없음
51	논현동	26-11	도	43	43	국	건설교통부				변경없음
52	논현동	38-21	대	2	2	최**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동***호				변경
53	논현동	38-6	도	1	1	최**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길**,***동***호				변경
총 합 계				3,919	2,768						

지 장 물 현 황

NO.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및 수 량	실제 이용 사항	소 유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논현동	44-15	블록당	H=1.8	17.56m	울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안**			기존
			수목		2주						
1	논현동	44-15	블록당	H=1.8	27.56m	울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안**			변경
			수목		2주						
			수도계량기		2조						
2	논현동	36-5	블록당	H=1.0	67.1m	울타리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최**			기존
2	논현동	36-5	블록당	H=1.0m	67.1m	울타리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최**			변경
			조경수		100주						
3	논현동	40-10	블록당	H=1.0	12.3m	울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논현동)	최**			변경없음
4	논현동	38-4	블록당	H=2.0	24m	울타리	남동구 논현동 ***	이**			변경없음
5	논현동	39	비닐하우스	H=2.0	29m	비닐하우스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최**			변경없음
			수목	H=5~7	34주						
6	논현동	29-12	창고	샌드	2.0	창고	남동구 논현동 ***	이**			변경없음
			수목	H=5~7	34주						
7	논현동	36-3	담장	쇠파이프	50m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최**			변경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33호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3월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업 명 :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73번지 일원
- 사 업 량 : 279필지, 147,107.2㎡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3. 토지이용규제내용(지역·지구 등)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보전녹지지역	「간석부평농장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자연녹지지역	「간석부평농장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준보전산지	「간석부평농장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공익용산지	「간석부평농장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준공업지역	「간석부평농장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	「간석부평농장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4.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61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